

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주)피엔알(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모든 계약(용역 및 협력작업계약, 설비나 자재구매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설비시공일괄 포함)) 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입찰자'라 한다)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회사의 인터넷 구매시스템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구매절차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화상설명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집합하여 현장설명회를 하거나 입찰공고시 구입사양서 또는 공사현장설명서를 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회사에서 참가자격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정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 및 구매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 1 항의 인터넷 화상설명회의시 시스템 장애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명회의 개시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통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 4 조 (입찰관련자료의 열람과 숙지) ① 입찰관련자료는 구매관련약관(전자상거래약관, 윤리특별약관 포함),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 작업사양서, 기타 참조자료(대금지불조건, 납품지역 등) 및 입찰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말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제 1 항의 입찰관련자료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③ 구매관련약관, 입찰유의서, 대금지불조건 및 통합구매자료는 회사의 전자입찰 사이트 (인터넷 구매시스템의 "구매안내", "대금지불")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입찰관련자료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5 조 (전자투찰 방법) 입찰자는 전자입찰 진행화면에서 투찰 및 투찰금액 수정이 가능하다. 투찰금액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하며, 총액 입찰인 경우는 단가를 입력하면 수량을 곱한 총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된다. 투찰 후 마감시간 전까지는 Line 별 단가 또는 총액을 수정하여 투찰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① 봉인입찰(Sealed Bidding)의 경우 입찰 차수마다 입찰 마감 시간까지 투찰 및 투찰금액 수정이 가능하며, 역경매(Reverse Auction)의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수회의 투찰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전자기술로써 제공하는 자동투찰(Proxy)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 ②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투찰한 금액에 대해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견적사양의 제출)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시 견적사양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요구하는 견적사양의 내용이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첨부 1]"를 입찰공고문에 첨부하여 입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 2 항의 경우 입찰자가 스스로 회사가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에 제공할 상세 기술자료 목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회사와 입찰자간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기술자료 요구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입찰내용 확인) 계약담당자는 최종 라운드 입찰마감 이전에는 Target Price 나 입찰자의 투찰금액을 확인 할 수 없다 (단, 해당 라운드 입찰마감 결과 투찰금액이 Target Price 이하일 경우에는 확인 할 수 있다)

제 8 조 (낙찰자의 결정방법) 낙찰자의 결정은 아래 각호의 조건에 의거한다.

- ① 낙찰자는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로 하되,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의 투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최저투찰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이라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종합평가제, 저가제한 낙찰제, 시장가 경쟁 낙찰제 등을 적용 입찰건의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 ③ TCO (Total Cost of Ownership) 평가를 수행하는 입찰의 경우는 회사가 정한 TCO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안한 자를 우선협상사로 한다.
- ④ 시설공사계약은 당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내용에 의해 낙찰사를 결정한다.
- ⑤ 동일가격 투찰 등으로 낙찰자 선정 대상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⑥ 견적사양 제출을 회사가 요구한 경우, 견적사양 검토결과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 ⑦ 회사는 설비/공사 입찰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응찰한 최저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의거, 덤핑방지를 위한 적격심사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차순위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부적격 입찰참가자가 3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서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② 봉인입찰(Sealed Bidding)의 경우 동일 입찰 건에 동일인이 2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③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한 입찰
- ④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95.6.21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에서 규정하는 담합행위에 의한 입찰
- ⑥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⑦ 제 1 호 내지 제 6 호 이외에 사회통념상 하자가 있다고 간주되는 입찰
- ⑧ 제 2 호에서 “동일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가. 1 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사실상 수개의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나. 1 인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경우 각 해당되는 수명의 개인 또는 수개의 법인

<참고>

-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주주·출자자 등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친족관계’란 6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말한다.
-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은 동일인으로 본다.

제 10 조 (입찰중지) 시스템상의 장애 발생 등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회사는 입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입찰 건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입찰 참가사들에게 입찰의 중단 또는 취소사실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연기사실과 연기사유 그리고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포스코그룹사에서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혹은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공급사 평가시 반영한다.

② 통합소싱그룹 공급사가 통합구매 참여그룹사에서 계약불이행 혹은 공급사성과분석 결과로 인해 해당 소싱그룹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통합구매조직에서 수행하는 해당 소싱그룹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포스코그룹사는 입찰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그룹사 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다.

1. 입찰참여 회사에 대한 정보: 업체(상호)명·주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제 13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보증금 납부후 5 일 이내에 전자서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투찰한 단가를 적용한다. ('10.1.7 부터 개정, 시행) 단, 시설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회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4 조 (대금 지불 기준) 회사 대금지불 일반기준에 의거 지불한다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일반지불 : 회사의 구매관련 모든 공급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적 지불 기준
- 특례지불 : 구매업체의 지불조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건별로 적용하는 지불기준
- 즉시지불 : 제세공과금 및 직원 경비등 지정 납부일에 지불이 필요한 경우

(구매시스템의 초화면 “대금지불” 참조)

| 구 분 | | 지불 기준 | | 지불 조건 | | 지불 주기 |
|------|------|--------|--------|-----------------------|------|-----------------|
| | | 1천만원이하 | 1천만원초과 | 현금 지불일 | 어음일수 | |
| 일반지불 | 일반기업 | 전액현금 | 전액어음 | 세금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15일후 | 60일 | 주 1회 (매주금요일) |
| | 중소기업 | | | | 30일 | |
| 특례지불 | | 전액현금 | | | | 지정일지불 |
| 즉시지불 | | 전액현금 | | | | - |

제 15 조 (선급금의 지급) 계약금액이 1,000 만원이상인 경우 계약시점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전사 자금지불조건에 따른다. (계약 금액의 20%내)

제 16 조 (중도금의 지급) 중도금은 설비구매 및 연구장치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계약금액(설비비, 장치비 기준)이 1 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80 일 이상 소요되는 설비구매 및 연구장치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1/2 경과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도금은 설비비, 장치비의 30% 이내로 한다.

제17조 (보증금의 납부) ①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은 업무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총도급금액의 10%로 하여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 중 아래 각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익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인 계약기간 종료후, 총 도급 금액의 10%를 그 작업 및 물품 등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이 아래 각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포스코 그룹사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익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8 조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해 체결된 직전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에 제 1 차 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영업비밀보호) ① 입찰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알거나 취득하게 된 물품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 및 입찰을 주관하는 자(이하 '주관자'라 한다)의 영업비밀을 주관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입찰참여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는 그 임직원, 하도급공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주관자의 영업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 하도급공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입찰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약정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해 주관자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2.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 3.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 20 조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실시허락) ① 낙찰자는 낙찰 이후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 설비나 자재의 제작 및 공급, 시설공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회사 단독소유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는 이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후 실시권자임을 이유로 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는 없다.

② 제 1 항의 계약이행을 위한 실시 이외에 제 3 자를 위한 설비나 자재의 제작 및 공급, 시설공사 등에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낙찰자는 회사에 대해 별도로 유상의 지적재산권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시계약

체결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른다.

③ 낙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 1 항, 제 2 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윤리특별약관 제 5 조 등 관련 계약위반과 특허법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낙찰자에게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후 1 년까지는 본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실시여부·범위·내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신의성실에 의하여 응하여야한다

posco
PNR